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043
----------	-------

제출연월일 : 2026. 9. 3.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주식의 처분은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 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를 조정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취득·처분 관련 과세체계 정비

1)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대상 조정(안 제16조제1항)

법인이 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대상으로 보고, 해당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대상에서 제외함.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의 익금 및 손금의 불산입(안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3호 신설)

내국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및 손비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도록 함.

나.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의 상향(안 제18조의4 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자회사와 그 외국자회사가 완전지배하는 다른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의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그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다.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안 제24조제2항제1호
마목14) 신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에 추가하여 해당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조정(안 제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등에 대한 연간 손금산입 한도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마.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안 제55조의2제1항제3호 및 부칙 제1조 단서)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에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의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자기주식등”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의2.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해당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 받은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기주식등 처분이익: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자기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제4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와 그 외국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손자회사”라 한다) 간 사업구조의 전부 또는 일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경우로서 그 수입배당금액이 외국손자회사의 주식등의 전부 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
2. 제1호에 따른 외국자회사와 외국손자회사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동일한 상대국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각각 배당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해당 상대국에서 제1호에 따른 외국자회사와 외국손

자회사 간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를 이연(移延)할 것

제18조의4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5항”으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명세서의”를 “명세서 등 관련 서류의”로 한다.

1.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2.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및 제5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기주식등 처분손실: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자기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를 15)로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5)[종전의 14)] 중 “13)까지”를 “14)까지”로 한다.

- 1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을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800만원”을 각각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

가.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나.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인 업무용승용차: 1,000만원

나. 가목 외의 업무용승용차: 700만원

제27조의2제4항 중 “800만원”을 각각 “제3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를 “제3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을 “조세조약”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3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98조의8제1항 중 “주식”을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1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및 손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기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 및 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

5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	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	제) ① -----	
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			-----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			-----	
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			-----	
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		1. -----		
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		-----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		-----		
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		-----		
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		-----		
과하는 금액 <단서 신설>		-----.	다만, 법인이 취	
			득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	
			지분(이하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	
			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	
			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신 설>

2. (생 략)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
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
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의2.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
득함에 따라 주주등인 내국법
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
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
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
결회사를 통하여 해당 자기주
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해당 법
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
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
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

3. ----- 자기주식등-----

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
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
액

4. ~ 6. (생략)

②·③ (생략)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
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④
(생략)

<신설>

--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자기주식등 처분이익: 자기주
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
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
계액이 해당 자기주식등을 취
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
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
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제4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배당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와 그 외국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손자회사”라 한다) 간 사업구조의 전부 또는 일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경우로서 그 수입배당금액이 외국손자회사의 주식등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

2. 제1호에 따른 외국자회사와 외국손자회사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동일한 상대국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각각 배당기준일 현재 5년 이상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
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
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해당 상대국에
서 제1호에 따른 외국자회사
와 외국손자회사 간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
지 아니하거나 과세를 이연
(移延)할 것

⑥ 제1항 또는 제5항-----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

1.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
세서

2.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
세서 및 제5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 ----- 제6항-----

명세서 등 관련 서류의 -----
-----.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
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신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
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
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
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
비의 손금불산입) -----

-----.

1. 2. (현행과 같음)

3. 자기주식등 처분손실: 자기주
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
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
계액이 해당 자기주식등을 취
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 ·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마. -----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 이 설립한 「보건의료기 술 진흥법」 제28조의2제 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 단	15) ----- 14)까지----- ----- ----- -----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 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② (생 략)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 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 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 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③ ----- -----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

가.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업무용승용차별 감
가상각비

나.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별 임
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u>800만원</u>(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u>800만원</u>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u>800만원</u>”을 각각 “<u>400만원</u>”으로 한다. ⑥ · ⑦ (생략)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u>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인 업무용승용차: 1,000만원</u> <u>나. 가목 외의 업무용승용차: 700만원</u> ④ ----- ----- ---- <u>제3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u>----- <u>제3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u>----- ----- ----- ----- -----. ⑤ ----- ----- ----- ----- ----- <u>제3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u>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
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
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
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
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비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
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
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
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
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
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
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

----- 조세조약-----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
한 과세특례) ① -----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100분의 20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국세 수입 △46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지출			해	당	없	음		
	소 계(A)							
수입	○ 자기주식 취득시 의제 배당 과세(§16)		추	정	곤	란		
	○ 자기주식 처분이익 익금 불산입(§17)		추	정	곤	란		
	○ 완전자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 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의 상향(§18의4)		추	정	곤	란		
	○ 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 불산입(§20)		추	정	곤	란		
	○ 국립소방병원 특례 기부금 대상 확대(§24)		추	정	곤	란		
	○ 업무용승용차 감가 상각비 한도 조정(§27의2)	△4	△48	△92	△136	△180	△460	△92
	○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55의2)		추	정	곤	란		
	소 계(B)	△4	△48	△92	△136	△180	△460	△92
총 비용(A-B)		4	48	92	136	180	460	9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16조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자기주식 취득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2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3	제18조의4제5항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의 상향)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손자회사의 주식을 배당한 경우 해당 수입배당금에 대해 과세이연하기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4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자기주식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5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6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연간 손금산입 한도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
7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16조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기주식 취득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2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3	제18조의4제5항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의 상향)	×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규모, 배당 규모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4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5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해당 기부금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6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7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6.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자기주식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16)
 - 세수증 : 추정곤란
 -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기주식 취득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 자기주식 처분이익 익금불산입(§17)
 - 세수감 : 추정곤란
 - 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의 상향(§18의4)
 - 세수감 : 추정곤란
 -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규모, 배당 규모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 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불산입(§20)
 - 세수증 : 추정곤란
 - 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24)
 - 세수감 : 추정곤란
 - 해당 기부금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27의2)
 - 세수감 : △460억원(연평균 △92)
 - 전체 업무용 승용차 신고 대수 및 법인세의 실효세율 등을 고려하여 추계
-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55의2)
 - 세수증 : 추정곤란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민다연	정지운	이영주	박홍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민다연	044-215-4226	gFXML140@korea.kr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5년간 46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4	48	92	136	180	460
○ 회계·기금 간 전입	-	-	-	-	-	-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	-	-	-	-	-
○ 기타	-	-	-	-	-	-
〈합 계〉	4	48	92	136	180	460

II. 부문별 재원조달 방안

○ 5년간 460억원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또는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 중앙정부	4	48	92	136	180	460
○ 일반회계	4	48	92	136	180	460
〈 합 계 〉	4	48	92	136	180	460

III.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총비용 460억원은 종합부동산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개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 세법개정안 전체 국세수입 증가분 등을 통하여 조달할 계획이며, 2027년 이후에도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IV. 부대의견

☐ 해당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26년 7~8월	기획예산처	세입예산안에 반영

VI.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민다연	정지운	이영주	박홍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민다연	044-215-4226	gfxm140@korea.kr